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사업
위·수탁 협약서**

2018. .



서울특별시 ·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사업 위수탁 협약서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이라 한다)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사업의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서울시”의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설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 세부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전력공급설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등으로 구성되고, KS 규격이나 단체 표준 규격을 만족하며, 공인시험기관의 적합성 시험을 완료한 충전기를 말하며 이동형 충전기를 포함한다.
3. “충전사업자”란 완속충전기 신청 접수, 확인 및 설치·운영·사후관리, 자금투자(직·간접 투자) 등을 수행하는자로서 “공단”이 선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사업의 범위) ① “서울시”가 “공단”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범위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수행기관 공모 및 보조금 정산 업무와 이를 위한 부대업무로 한다.

② 사업규모 및 사업비는 정하여진 예산에 의한다.

제4조 (기관별 업무)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서울시”와 “공단”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서울시”의 업무

- 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국비)
- 나. 사업 관련 행정절차 이행 협조
- 다. “공단” 및 충전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행정지원

2. “공단”의 업무

- 가. 충전사업자 선정 및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집행·정산업무
- 나. 충전사업자의 충전기 설치에 대한 보조금 지급 업무
- 다. 충전사업자의 충전기 설치 업무 관리
- 라. 충전기 설치 관련 홍보·안내
- 마. 상기 각 목의 수행에 따른 부대업무

제5조 (사업기간)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서울시”와 “공단”이 각각 날인한 날로부터 충전사업자가 당해 연도 설치한 충전기 보조금 지급 완료일까지로 한다.

제6조 (사업비) ①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서울시”가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통합하여 집행한다.

- 1. 환경부 「'18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보조금. 단,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며, 명시이월된 보조금은 전년도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다.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

③ “서울시”는 “공단”에게 사업수행을 위탁함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공단”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 수수료) ①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는 전국 공용충전기 설치공사 보조금 지급 총액 기준으로 <붙임>의

“위탁수수료 요율표”를 적용하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 위탁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 한다.

② 1호에 따른 위탁 수수료는 공단이 수행하는 완속충전기 위·수탁 설치사업 전체 사업비 중 지자체별 사업비 비율을 적용하여 보조금 집행 잔액에서 정산한다.

제8조 (사업비 청구 및 지급) 제6조에 의한 사업비는 “공단”의 사업진행에 따른 예상 소요사업비 청구에 의하여 “서울시”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사업변경) ① “공단”은 사업추진 중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요사항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 증감이 없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는 “공단”이 우선 변경 조치한 후 “서울시”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긴급을 요하여 사전협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공단”은 선조치를 취한 후 “서울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통지 및 자료제출 등) ① 원활한 사업 관리를 위하여 “공단”은 사업추진과 관련한 사업수행 결과 및 집행 내역서의 자료를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서울시”와 “공단”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료는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서울시”의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단”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회계처리) ① 본 협약에 따른 회계처리는 정부의 예산회계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12조 (사업비 집행 및 정산) ①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은 통합하여 집행하고 정산한다.

② “공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중 위탁 수수료를 제외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 증빙서류를 포함한 사업비 정산 내역을 “서울시”에게 통보하고, 집행잔액(금융이자 포함)은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 (성실 및 보안의 의무) “서울시”와 “공단”은 각자의 소관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과 관련된 정보 또는 비밀 사항은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4조 (협약의 해약 및 해지) ① 이 협약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해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이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2. 기타의 사정으로 인하여 “서울시”와 “공단”이 본 협약을 해약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 하였을 때

② “공단”은 이 협약이 해약 또는 해지되었을 때에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일괄 정산 한다.

제15조 (손해배상) “공단”은 수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단의 귀책으로 인행 발생한 민·형사상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6조 (기타 협의사항) ① 이 협약은 “서울시”와 “공단”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서울시”와 “공단”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부 칙 >

제1조(효력발생) 이 협약서는 “서울시”와 “공단”이 날인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지침의 준용) 기타 사항은 환경부 「2018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18년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을 따른다.

제3조(협약서 작성보관)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기관이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전 병 성 (인)



<첨 부>

위탁 수수료 요율표

* 환경시설설치 및 수탁운영사업 수수료 산정에 관한 예규 (별표1)

단위 : %

공사비 (억원)	수수료 요율						
	설계· 시공일괄	기본· 실시설계 ·시공	실시설계 ·시공	단계별			
				설계전 단계	기본설계 단계	실시설계 단계	시공 단계
10억원	13.014	12.823	12.628	0.347	0.386	0.772	11.856
20억원	12.587	12.399	12.206	0.342	0.380	0.758	11.448
30억원	11.236	11.051	10.862	0.336	0.373	0.746	10.116
40억원	9.896	9.715	9.529	0.330	0.367	0.733	8.796
50억원	9.098	8.920	8.737	0.325	0.361	0.721	8.016
70억원	8.826	8.653	8.477	0.313	0.349	0.696	7.781
100억원	8.417	8.254	8.087	0.297	0.330	0.659	7.428
150억원	7.778	7.630	7.477	0.271	0.301	0.601	6.876
200억원	7.128	6.993	6.856	0.245	0.272	0.544	6.312
300억원	6.449	6.325	6.199	0.225	0.250	0.499	5.700
400억원	5.762	5.629	5.511	0.211	0.235	0.469	5.316
500억원	5.254	5.141	5.067	0.199	0.217	0.448	4.802
700억원	4.879	4.788	4.718	0.163	0.175	0.369	4.494
1,000억원	4.131	4.058	3.993	0.133	0.142	0.300	3.801
2,000억원	2.840	2.791	2.736	0.091	0.097	0.207	2.592
3,000억원	2.393	2.357	2.314	0.067	0.072	0.151	2.205
4,000억원	2.170	2.140	2.103	0.055	0.059	0.124	2.012
5,000억원	2.036	2.009	1.977	0.048	0.052	0.109	1.896
6,000억원	1.946	1.923	1.892	0.043	0.047	0.098	1.819

- (주) 1.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함하지 않는다.
2. 제3조제1호의 사업수탁 형태에 따라 각 부문별 요율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각 부문별 사업의 일부를 수탁하는 경우에는 각 부문별 수수료요율에 해당사업의 수탁배분비율을 감안하여 적용한다.
3.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는 경우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으로 요율을 산정하여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은 버린다.
4.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 표에 불구하고 위탁자와 공단 간에 합의하여 해당 수수료 요율의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5. 10억원 미만의 공사비에 대한 수수료의 요율은 10억원의 적용요율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위탁자와 공단간의 합의에 의한다.
6. 단위사업별 수수료 금액은 원단위로 계산하고 산정된 위탁수수료 총액의 천원 미만은 절사한다.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으로 지켜주세요!

I·SEOUL·U
이달 나의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18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알림

1. 한국환경공단 자동차환경계획팀-644(2018. 3. 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한국환경공단 간 '18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사업 위·수탁 협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동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협 약 명 : '18년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사업 위·수탁 협약

나. 협약일자 : 2018. 3. 19.(월)

다. 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18년 설치 충전기 보조금 지급 완료일까지

붙임 : 위·수탁 협약서 1부(별도송부). 끝.

서울특별시



주무관 최민욱 그린카보급팀장 이종혁 기후대기과장 03/16 신대현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5342 (2018.3.16.) 접수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44 /전송 02-2133-1023 / minuk3693@seoul.go.kr / 부분공개(5)